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60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유한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6,412,620원, 지방교육세 2,351,8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80,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06,000원의 징수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 [redacted]주식회사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redacted]아파트 [redacted]동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1,331억여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8.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9,006,000원, 지방교육세 1,900,600원, 농어촌특별세 9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① 취득세 19,006,000원, 가산세 6,412,620원, ② 지방교육세 2,351,800원(가산세 포함), ③ 농어촌특별세 1,080,87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8,851,29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문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최초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제1항 제10호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법 조항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 문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다)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산'이라는 문구는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부동산유동화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도에 폐지하면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실제로 일부 과세관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 점, 금융감독원은 2012. 8.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서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경매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정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정부는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문으로 정부제출안을 제출하였고, ②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제9호 법문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③ 정부제출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세수증가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④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률효과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⑤ 정부가 스스로 발간한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자료의 세제 부분에서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같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나)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redacted] 유한회사 등 여러 유동화전문회사들이 경매취득의 경우에 양산시장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에도 2012. 12. 31. 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해 왔고 정부도 위와 같은 과세행정을 용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세목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와 가산세의 각 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각 세목에 관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다. 피고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 어떤 세목의 것인지 알 수 없고, 각 세목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9, 13,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에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13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③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redacted] 유한회사는 2012. 9. 27. [redacted]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장으로부터, [redacted] 유한회사는 2012. 10. 14. [redacted]시장으로부터, [redacted] 유한회사는 2012. 11. 19. [redacted]시장으로부터, [redacted] 유한회사는 2012. 12. 10.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취득세를 종전과 같이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한 것인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4. 1. 14.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정부가 취득세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④ 원고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427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에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950,3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세목' 부분에 '취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각각의 세액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각 본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부하기 전인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그 과세예고 통지서(을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라 한다)에 원고가 2012. 8. 1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를 예고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950,3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세율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비교하면 취득세의 세율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연도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연도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본세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본세 부분에 존재하는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본세 징수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각각의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지방교육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본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지방교육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각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에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의 종류와 그 종류별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금액보다 많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본세,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징수처분과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 징수처분과 취득세 등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윤진규

판사 이민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구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신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